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3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비군법」 제14조의3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4. 16. ~ 2024.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2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

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